

의안번호	2219091
의 퇴 인	김영호의원
회 답 일	2026.08.04.
추계번호	26C2732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5 신설 (교육시설의 개방 및 책임 특례)	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은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다(제1항).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(제2항).	의무규정
		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안전관리, 공제 또는 보험 가입,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(제3항).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의 범위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(제4항).	의무규정
2	안 제33조의2 신설 (교육시설지원기관)	교육감은 교육시설의 개방·운영,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지원기관(이하 “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지정·운영할 수 있다(제1항).	재량규정
		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(제2항). 1.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2. 교육시설의 안전,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에 관한 업무 3.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 4.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5. 그 밖에 학교 시설관리업무를 부담 경감 및 지원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업	
		교육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(제3항).	
		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(제4항).	의무규정
3	안 제35조 (교육시설안전공단의 설립)	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<u>교육시설안전공단</u> 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(제1항).	의무규정
4	안 제36조제1항 제16호 내지 제19호 신설 (공단의 사업)	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(제1항). 14. <u>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,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기술의 개발·보급</u> 15. <u>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 운영,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</u>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36조제1항 제16호 내지 제19호 신설 (공단의 사업)	16.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17.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 18. 교육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 19. 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업무	의무규정
5	안 제37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(공단의 재정)	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 2. 정부의 출연금·보조금 3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	의무규정
6	안 제45조의2 신설 (조직역량 진단)	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전문성,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정책 수 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(제1항).	재량규정
7	안 제45조의2 신설 (조직역량 진단)	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진단 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. 그 밖에 진단의 시기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(제2항).	의무규정
		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역량 진단 결과 조직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단은 이를 지체 없 이 이행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(제3항).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의5 신설 (교육시설의 개방 및 책임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	안 제33조의2 신설 (교육시설지원기관)	
	안 제35조 (교육시설안전공단 의 설립)	
	안 제36조제1항 제16호 내지 제19호 신설 (공단의 사업)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7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(공단의 재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	안 제45조의2 신설 (조직역량 진단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①교육시설 개방 및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, ②교육감이 교육시설의 통합 관리를 위한 교육시설지원기관(이하 “지원기관”)을 설치·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, ③한국교육시설안전원(이하 “안전원”)을 교육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)으로 개편하고, ④교육부장관이 공단의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현재 교육시설 운영·관리 업무는 세부 분야별로 개별 학교 및 시·도 교육청 등으로 관리주체가 상이하며 단일한 전담기관이 존재하지 않음
 - － 구체적으로, 교육시설의 개방·활용 및 안전 및 유지관리는 개별 학교가, 폐교 관리는 시·도교육청이,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는 해당 시설 설치자가 각각 담당하고 있음

[표 1] 교육시설 운영·관리 업무의 관리·운영 주체

수행 기관	분야	법적 근거
개별 학교	교육시설 개방 및 활용	「초·중등교육법」 §11
개별 학교	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	「초·중등교육법」 §30의9
시·도교육청	폐교 관리 및 활용	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§4 등
학교복합시설 설치자	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	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§6

자료: 국가법령정보센터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한편, 안전원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1)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, 교육시설 공제사업, 통합정보망 구축 등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

1)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(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)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(이하 “안전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[표 2]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현황

구분	내용
명칭	한국교육시설안전원
법인유형	비영리 특수법인(「민법」상 사단법인 규정 준용)
의결기구	총회(198명), 이사회(11명),
조직체계	이사장 1명, 상임감사 1명, 2개 본부(경영관리본부, 사업관리본부)
주요사업	교육시설공제사업, 교육시설 재난 및 재해 예방,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,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, 통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관리

자료: 교육부 제출

- (안 제10조의5) 개정안은 교육시설 개방 및 교육시설 장 면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감독기관장이 개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나, 이는 시·도의 교육규칙 등에 근거하여 개별 학교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유발하지 않음
 - 현행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1조²⁾는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이용을 결정하면서, 공립·사립의 경우 시·도의 교육규칙에 위임함
 - 이에 따라 각 시·도는 국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립·사립학교도 학교장이 결정권을 지니도록 하면서 시·도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통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
 - 또한, 학교장은 학교시설물 이용규칙 또는 사용 신청서 등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 및 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
- (안 제33조의2)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지원기관을 설치·지정하여 교육시설의 개방 등에 관한 사업을 통합 수행하는 경우 기관 출연·보조 및 직접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, 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이 시·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고, 개별 학교 및 시·도교육청 등이 수행 중인 업무를 지원기관에 통합·이관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므로, 이에 따른 재정소요 순증가분만을 분리하여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
2)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11조(학교시설 등의 이용) 제11조(학교시설 등의 이용)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, 공립·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

- (안 제35조 내지 제37조) 개정안에 따라 안전원을 공단으로 개편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공단 운영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·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, 현재 안전원은 공제회비 등 자체 사업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개편으로 추가되는 교육시설 개방 및 폐교 관리, 지원기관 운영 지원 등의 업무는 현재 시·도교육청 등 타 기관이 수행 중이므로, 현실점에서 공단의 예산 투입 규모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* [참고자료]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수입·지출 예산 현황
- (안 제45조의2) 개정안 시행으로 공단의 조직역량 진단이 실시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, 위와 같이 공단의 예산 투입 규모 추정이 곤란하고, 조직역량 진단의 주기 및 실시 범위 등에 불확정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수입·지출 예산 현황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	2024		증감	
	금액	비율	금액	비율	금액	비율
◇ 총수입	510	100%	618	100%	-108	-17.5%
1. 사업수입	396	77.6%	482	78.0%	-86	-17.8%
공제사업	381	74.7%	358	57.9%	23	6.4%
수탁사업	15	2.9%	125	20.2%	-110	-88.0%
2. 이자수익	68	13.3%	63	10.2%	5	7.9%
3. 선급법인세 환입	10	2.0%	9	1.5%	1	11.1%
4. 재난예방운영준비금	36	7.1%	64	10.4%	-28	-43.8%
◇ 총지출	510	100%	618	100%	-108	-17.5%
1. 사업비	417	81.8%	510	82.5%	-93	-18.2%
공제사업	402	78.8%	380	61.5%	22	5.8%
수탁사업	15	2.9%	130	21.0%	-115	-88.5%
2. 일반관리비	67	13.1%	60	9.7%	7	11.7%
3. 비유동자산	7	1.4%	32	5.2%	-25	-78.1%
4. 선납법인세 등	9	1.8%	16	2.6%	-7	-43.8%

자료: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